STATE OF NEW YORK | EXECUTIVE CHAMBER
ANDREW M. CUOMO | GOVERNOR

속보: 2012년 1월 18일

쿠오모 주지사, 주정부 지원 서비스 제공업체의 과도한 보상금을 개혁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하다

오늘 앤드류 M 쿠오모.(Andrew M. 주지사가 주정부 지원 서비스 제공업체의 행정비용 및 경영자 보상금 지출을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행정명령에 서명하였습니다.

"우리는 납세자의 세금이 뉴요커들의 삶을 증진시키는 데 항상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사용되도록 힘써야 합니다"라고 쿠오모 주지사가 말했습니다. "행정명령은 이러한 공적 자금이 과다한 보상금과 불필요한 행정비용으로 전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납세자의 세금이 형편이 어려운 뉴요커들에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다음은 오늘 오후에 서명된 행정명령의 전문입니다:

행정명령(E X E C U T I V E O R D E R)

주정부 지원 행정비용과 경영자 보상금 제한

뉴욕 주정부는 형편이 어려운 뉴요커들을 위해 중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리단체와 다수의 면세 기관에게 다른 납세자의 세금으로 직간접적인 재정적 도움을 주거나 자금을 제공하는 것을 승인한다; 그리고

뉴욕 주정부는 뉴요커들과 뉴욕 커뮤니티의 삶을 증진시키는 데 납세자의 세금이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사용되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할 책임이 있다; 그리고

일부 상황에서는 주정부 기금 또는 주정부 승인금을 받는 서비스 제공업체가 이러한 돈의 상당 부분을 의뢰인들에게 직접적인 보살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사용하기보다 과도한 행정비용과 과도한 경영자 보상금을 지급하는 데 이 돈을 사용했다; 그리고

이러한 공적 자금의 남용은 위와 관련된 서비스 비용을 지급하는 뉴욕 시민들 뿐 아니라 이런 서비스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주고 있다;

이러한 경영자 보상금과 행정비용의 남용을 억제하고 형편이 어려운 뉴요커들을 돕는 데 세금이 제일 먼저 사용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따라 나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헌법 및 뉴욕주 법에 의해 내게 확립된 권한에 의해 다음과 같이 명령합니다:

1. 본 행정명령 고시 후 90일 이내에 발달장애인사무소(Office for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정신건강사무소(Office of Mental Health), 알코올및약물남용업무사무소(Office of Alcoholism and Substance Abuse Services), 아동및가정서비스사무소(Office of Children and Family Services), 단기지원및장애지원사무소(Office of Temporary and Disability Assistance),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노인서비스사무소(Office for the Aging), 사법서비스사무소(Division of Criminal Justice Services), 희생자업무서비스사무소(Office of Victim Services)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서비스 제공업체들에게 뉴욕주 재정지원 또는 뉴욕주 승인 지불금을 제공하는 각 ES(Executive State) 기관의 장은 법규를 공표하고, 운영비 지원을 위한 뉴욕주의 재정 지원 또는 주정부 승인금으로 보상 받을 자격이 되는 서비스 제공업체의 행정 비용과 경영자 보상금의 범위 및 유형을 처리하기 위해 이들 서비스 제공업체와 체결한 계약서 수정을 포함해 각 기관의 권한 범위 내에서 기타 조치를 취합니다.

2. 이러한 각 기관의 법규에는 해당 기관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보상을 받는 서비스 제공업체가 다음과 같은 제한사항을 준수해야 하는 요건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a. 운영비 지원을 위해 서비스 제공업체에게 제공되는 뉴욕주의 재정 지원 또는 주정부 승인금의 75%는 행정비용 지원보다는 직접적인 보살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은 본 요건의 이행과 관련하여 해당 주정부 기관에 의해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 액수는 2015년 4월 1일 기준으로 85%에 도달할 때까지 해마다 5%씩 증가할 것입니다.

    b. 실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뉴욕주의 재정 지원 또는 주정부 승인금의 상환액은 해당 서비스 제공업체의 경영자에게 지급하거나 제공될 연 199,000달러의 보상금이 아닙니다. 각 기관장은 적절한 인수에 따라 그리고 국장의 예산 승인에 따라 매년 이 수치를 조정할 수 있으나, 어떤 경우에도 이 수치는 미국 인사관리처(Office of Personnel Management)가 공표한 연방정부의 RBPES(Rates of Basic Pay for the Executive Schedule)의 Level I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3. 서비스 제공업체가 해당 주정부 기관이 정한 이러한 법규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기관장의 재량으로 이 업체와의 계약을 종료 또는 비-갱신 또는 지속적인 지원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각 주정부 기관의 법규에 따르면, 적절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또는 선의를 보일 경우 서비스 제공업체는 해당 주정부

기관 및 예산 국장의 승인에 따라 이러한 요건 또는 기타 관련 요건을 전부 또는 일부의 준수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4. 각 주정부 기관장은 이러한 요건의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해야 하는 서비스 제공업체로부터 정기적으로 데이터를 받아야 하고, 서비스 제공업체에게 과도한 경영자 보상금과 행정 비용을 지원하는 이러한 요건이 공적 자금 이용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 지 예산 국장에게 매년마다 보고해야 합니다.

2012년 1월 18일 Albany시에서
본인에게 부여한 권한 및
주 인장의 권한에 의해
이를 발표한다.

주지사

주지사 비서실장

###